

교육대학원여성교육지도자과정운영규정

제정 1995. 1. 4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 (목적) 이 운영규정은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제25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개강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명칭) 이 공개강좌의 명칭은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여성교육지도자과정(이하 과정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- 제3조 (운영) 이 과정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및 연구생 과정과는 별도의 강좌로서 운영한다.

제 2 장 입학

- 제4조 (입학정원) 이 과정의 입학정원은 40명 내외로 한다.
- 제5조 (입학자격) 이 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1. 사회교육 기관의 여성 임직원
 2. 사회복지 및 봉사단체의 여성 임직원
 3. 기업체 및 주요 기관의 여성 임직원
 4. 사회 지도급 인사의 가족
 5. 자영업 여성
 6. 사회활동에 관심이 있는 여성
- 제6조 (지원서류) 이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1. 입학원서(본 교육대학원 소정양식)
 2. 사진 3매(4×5cm)
 3.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 4. 기타 참고자료
- 제7조 (전형방법) 이 과정의 전형방법은 서류전형으로 한다.

제 3 장 등록, 수강 및 수료

- 제8조 (등록) 이 과정에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소정의 납입금을 지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하며, 일단 납입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제9조 (수강기간) 이 과정의 수강기간은 한 학기로 한다.
- 제10조 (개강) 이 과정은 매월 3월과 9월에 각각 개강함을 원칙으로 한다
- 제11조 (교과목) 이 과정의 수강과목은 개강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- 제12조 (수료) ① 이 과정의 수강생은 수업일수의 2/3 이상 출석하여야만 수료할 수 있다.
 ② 이 과정의 수료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한다.

제 4 장 운영위원회

- 제13조 (운영위원회) ① 이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

다.

② 운영위원회는 교육대학원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교육대학원장이 된다.

제14조 (기 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수강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
2. 교과목 설치에 관한 사항
3.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5 장 표 창

제15조 (표 창)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이 운영규정은 1995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